## 광명시 아동학대 ·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 2013. 5. 3 조례 제1921호

일부개정 2017. 3.12 조례 제2243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22. 8. 2 조례 제2868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, 「아동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아동복지시설"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- 5. "여성 폭력"이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.
- 6. "피해자"란 아동학대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아동학대·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

광명시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

야 하다.

-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,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 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시장은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, 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역연대의 설치) 시장은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·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광명시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(이하 "지역연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7조(지역연대 구성)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 위원은 아동·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〈개정 2017. 3. 12, 2022. 8. 2〉
  - 1.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
  - 2.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
  - 3.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
  - 4. 아동・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
  - 5.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
  - 6.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
  - 7. 교육지원청, 초・중・고등학교 교육기관 관계자
  - 8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

- 9.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역연대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  - 1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- 2. 위기 아동 ·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내 아동 ·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  - 4.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  - 1.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
  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유 때
  - 3.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
  - 4.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
  - 5.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6.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
- 제12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, 정기회

- 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간사)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.
  -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한다.
- 제14조(사례관리팀의 구성)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.
- 제15조(사례관리팀의 업무)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·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.
- 제16조(사례관리팀 회의운영)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 의결로 정한다.
- 제17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아동학대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수당 등)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〈2017. 3. 12 조례 제2243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제2조 생략

부칙〈2022. 8. 2 조례 제2868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